



AX얼라이언스

AI / AR 글래스 디바이스의 법률적 과제

법무법인(유) 광장 정원준 수석연구위원

Lee
& KO

발제자 소개



수석연구위원 **정원준**

E. jun1@leeko.com T. 02-6386-7957

학력

- 2019 고려대 법학 박사(지적재산권법)
- 2014 고려대 법학 석사(상법)
- 2008 성균관대 법학사

경력

- 2026-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수석연구위원
- 2020-2026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 2013-202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2025-현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분과 자문위원
- 2025-현재 지식재산청 인공지능 지식재산정책 민간전문가 협의체 위원
- 2025-현재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실무포럼 위원
- 2025-현재 행안부 공공데이터전략위 공공데이터 개방·법제도 전문위원
- 2025-현재 지시재산청 K브랜드 보호 및 한류대응반 자문위원
- 2025-현재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 위원
- 2025-현재 과기정통부 규제심사위 위원
- 2024-현재 우주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 2020-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5기/6기/7기)
- 2024 국무총리 표창(정보통신 유공)
- 2018,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 2021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Contents

I AR/AI 글래스의 부상 배경

II 관련 법률 쟁점 분석

III 법정책임 함의

I AR/VR 글래스의 부상 배경



AI 접목으로 사용자 데이터 아닌 주변인 촬영, 생체식별, 공간지도, AI 추론 등 법적 문제 대두

• 최근 AI/AR 클래스 부상 배경

-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를 인지한 뒤 그 위에 디지털 정보를 3차원적으로 정합해 사용자의 자각과 작업을 강화하는 기술로서 최근 변화는 ①고도화된 AI 적용 확대, ②Web AR·Geospatial AR 플랫폼의 확대, ③안경형 폼팩터 진전(HMD → 경량형 AI 스마트 글래스 → 디스플레이형 AR글래스)으로 요약
- 2025년 전년 대비 선 세계XR 디바이스 출하량 44.4%증가, 증가의 대부분은 스마트클래스 확산(IDC, 2025)

• AI/AR 클래스 구분

- AI 글래스는 카메라, 마이크, AI 결합으로 안경 카메라가 사진을 촬영하여 사물 인식하고 질문에 답변 생성, AR 글래스는 디스플레이 통해 현실 세계 사물 위 디지털 정보를 오버레이로 보여주는 것이 특징
- 두 개념은 'spatial anchoring'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구분: 정보 제공 화면이 공간 혹은 시야 기준인지 여부

• 서비스 구현의 구성요소

- AI컴퓨터 비전·SLAM, 센서 융합, 디스플레이·광학, 실시간 렌더링, SDK·플랫폼, 클라우드 등으로 구성·결합되어 있는 구조

최근 AI/AR 클래스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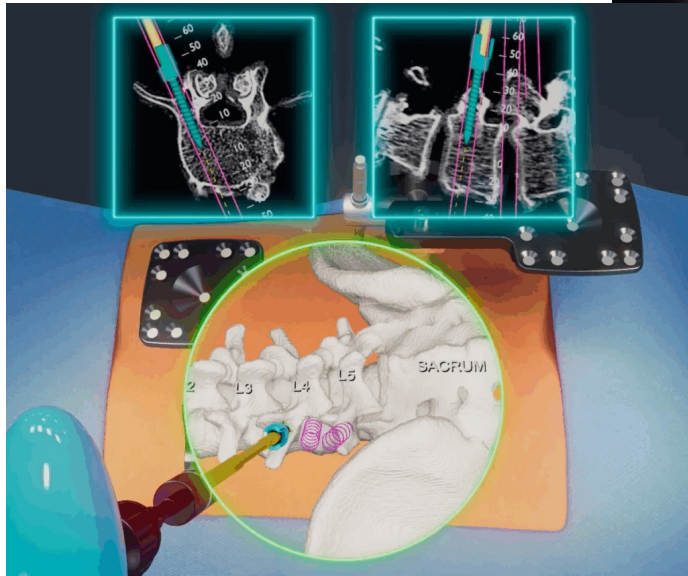
• 성장 요인

- 메타 레이밴, 삼성 갤럭시 XR, apple 비전프로 등 카메라, 마이크, 센서를 탑재한 AR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대중화 단계 진입
- 현재의 시장 확대는 AI 부각으로 인해 콘텐츠 품질 증가 및 디스플레이 필요 없는 AI 스마트글래스 등장으로 HMD의 문제였던 어지러움증, 무거움 등 착용상의 불편함 해소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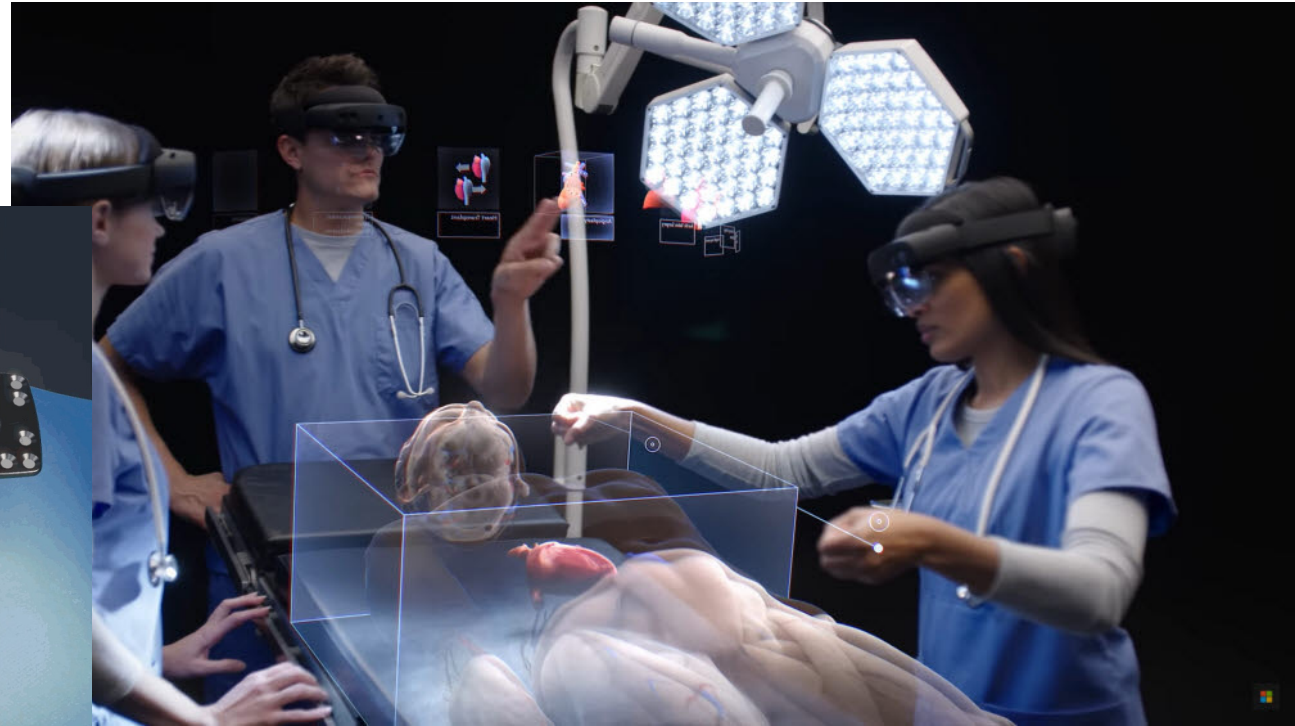
• 제약 요인

- 프라이버시·데이터 거버넌스, 하드웨어 비용·배터리 무게, 플랫폼 분절, 콘텐츠 제작비용 등의 기업 부담
- 특히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적법성 여부 판단의 모호함 등 규범적 해석 및 집행 문제가 상용화 속도를 제약
- 국내의 경우 XR 산업의 매출 상당 부분(약 80%이상)이 여전히 콘텐츠 제작·공급에 편중되어 있어(산업연구원, 2025) 규제이슈가 더욱 중요

분야별 활용 사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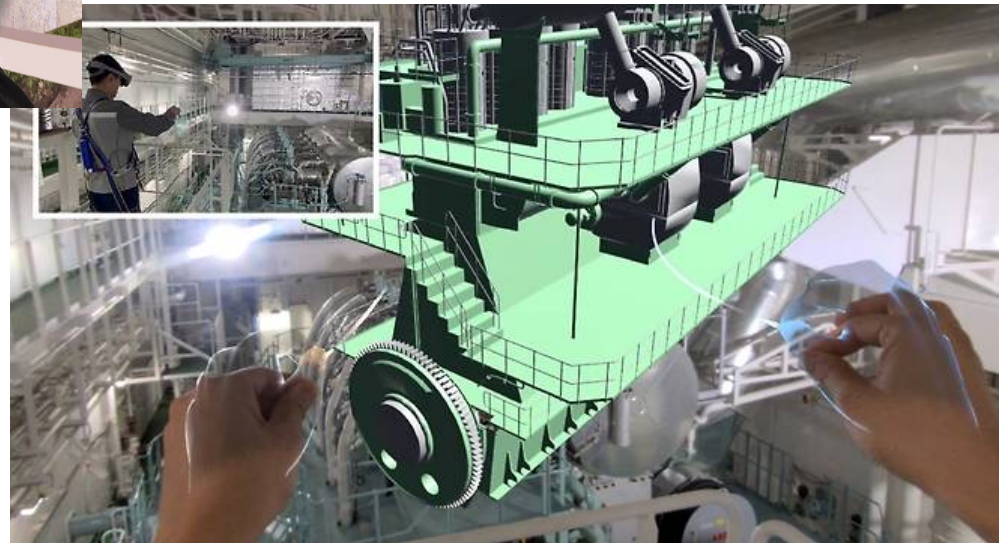
• 출처: augmedics 홈페이지



• 출처: MS홈페이지

수술 부위에 CT/MRI 등 의료영상을 3D로 중첩하여 의료진이 모니터로 시선을 옮기지 않고 핸드프리로 환자 해부구조/시술 경로를 확인하거나, 원격 전문의의 수술 지도에도 활용 : Philips-Microsoft HoloLens 기반 'AR 수술실', 정형외과/척추수술의 AR 내비게이션(Augmedics, Proprio 등)

분야별 활용 사례(2)



출처: 조선비즈(<https://v.daum.net/v/20251031060303960>)

그 밖에 분야별로 게임엔터테인먼트는 위치기반카메라형 경험, 유통에서 아바타는 주소 실수, 어두운 환경 자동 불빛, 애완견 경고 등 AI 기반 스마트글래스, 제조는 작업지시원격지원·AI 검사 교육 등 몰입형 실습으로 확산 중

착용형 디바이스의 특성상 제기되는 법률 쟁점



실시간·상시성, 불특정성, 다중센싱(스피커, 카메라, 마이크 등), 외부인식 불가, 영상정보·생체정보 수집 등 법적용 모호

- 전 세계적으로 B2C 착용형 디바이스 관련 법 위반 사례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메타 AI 글래스 촬영 영상 제3자 열람 사건 소송) 고객이 착용한 글라스로 촬영된 민감한 영상을 해외 하청업체 직원들(케냐 데이터라벨링업체)에게 전달되어 열람·분류된사건으로 소비자 집단 소송 제기(2026)
 - (메타 레이밴 스마트글래스 몰래 촬영 영상 금전 요구) BBC 조사에서 남성이 공공장소 등 여성에 접근해 작업을 거는 영상을 근거리 촬영하여 온라인 업로드 이후 영상 삭제에 대해 금전 요구한 사건(2026)
 - (하버드대 안면인식 실험) I-XRAY 시스템 통해 거리 행인의 사적 정보의 실시간 특정 가능성 경고(2024)
 - (WSJ 기자 시연) 녹화 중임을 인지한 사람은 전무, 매장 및 일상 공간에서 무단 촬영 우려 확산 등 사회적 쟁점화

상시적 정보 수집

카메라, 마이크가 사용자 시야와 함께 가동되어 의도치 않은 주변 정보의 수집

사전적 권리행사 제한

촬영이나 녹음 대상에 대한 동의 절차 등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재정립 필요

생체·민감정보의 실시간 분석

시선추적, 홍채, 음성지문, 행동패턴 등 민감성 생체정보를 상시 취득 및 활용

사후적 권리행사 제한

촬영자 특정이 어려워 명확한 고지 등의 의무 준수 여부 파악 통한 법집행 어려움

AI 분석 따른 신원 식별 문제

엣지, 클라우드가 실시간 영상을 AI로 분석하여 결합 즉시 식별 가능

외부 인식 불가능

안경 형태로 촬영되므로 외부에서 인식 불가능하며, 국내법과 해외법 충돌 여지

II 관련 법률 쟁점 분석

쟁점 사항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해당 여부 및 개보법 적용 여부

- 사전적·사후적 권리 보장과 기타 합리적 범위 내 적법 요건 충족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적용
 - 기본적으로 영상기기운영자(의무)가 수범주체이나, 제조사 등도 기획·설계·제조 단계(privacy by design)에서는 가이드 준수 권고
 -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경우 동 규정 적용 ⇒ 사적 목적 이용은 적용 제외, 이 경우 **개별법 행위금지 규정 적용**
 - ✓ 제15조제1항에 따른 적법 요건을 갖춘 경우(동의, 법률 규정, 공공기관 소관업무, 계약 이행, 정당한 이익 등)
 -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였으나 정보주체가 거부의를 밝히지 않은 경우 허용. 단,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방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촬영 사실 표시 의무 부과 ⇒ 충분히 알리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가용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 필요
- 사생활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금지되며, 인터넷 등 영상 공개 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우려 없도록 블러링 처리 등의 조치 필요

AI/AR글래스는 개보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착용형 장치'로서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에 해당



기타 AR/AI 클래스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 장소의 경계
- 촬영 사실 표시와 거부권 보장
- 촬영 기능과 AI 분석은 목적이 다르므로 목적 외 이용으로 인한 별도의 동의 등 별도 적법 처리 근거 필요
- 제조사, 플랫폼 사업자, 클라우드 사업자, 앱 개발자, 도입기업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자수탁자·공동처리자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계약서에 반영 필요
- 수집 당시는 단순 영상이더라도 알고리즘 결합으로 생체인식정보 또는 민감정보 처리 전환될 가능성, 안전성 확보조치 필요
- AR 착용 시 실무적인 업무상 이용 목적과 근로자 감시 목적은 분리하여야 하며, 처리 근거를 별도로 확보할 필요
- AI 학습데이터 활용 시 운영 목적 영상과 학습 목적 영상은 다르므로 처리 시 PET 등의 기술적 조치 필요
- AI 서비스 단계에서 투명성 확보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 필요하므로 자동화된 판단과 설명가능성과 관련하여 이의제기 및 거부권 절차 필요

쟁점 사항

영상 및 음성정보의 개인정보 개념 해당성 판단 기준

- 그 자체로서 식별가능한 정보의 경우
 - 얼굴 영상, 음성 등 그 자체로서 식별가능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보법 제25조의2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촬영이 금지됨
- 현재로서 식별 불가능하나, 추가 정보의 입수, 결합을 통해 식별이 가능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위하여 입수가능성과 결합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 ✓ 다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입수 가능하고, 불법적 방법 취득은 제외
 - ✓ (결합가능성)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예견되는 기술 발전 고려할 때, 결합 수반되는 시간·비용·노력이 비합리적으로 과다하지 않아야 함
 - ✓ (가이드라인 예시) 일반 차량등록번호의 경우 처리자가 보유한 DB와의 결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



쟁점 사항

생체정보의 개인정보 개념 해당성 판단 기준

• 생체정보 관련 법적 개념

- 개인정보보호법상 생체정보는 “지문, 얼굴, 총채, 정책,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 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로 정의(생체보호 안내서, 2024)
 - ✓ 생체정보는 **생체인식정보**와 **일반적인 생체정보**로 구분
 - ✓ 생체인식정보는 다시 **원본정보**와 **특징정보**로 구분되는데, 특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해당**

• 얼굴영상정보의 구분

- 얼굴의 특징점 등을 기술적으로 추출하여 개인의 인증, 식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생체인식정보에 해당, 개인 인증, 식별 목적 아닌 단순히 성별, 감정상태 등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생체정보에 해당

• 음성정보의 구분

- 음성을 통해 특징점 등을 기술적으로 추출하여 말하는 사람을 인식하여 응답하는 경우 생체인식정보에 해당, 개인을 확인하지 않고 감정상태나 행동패턴 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생체정보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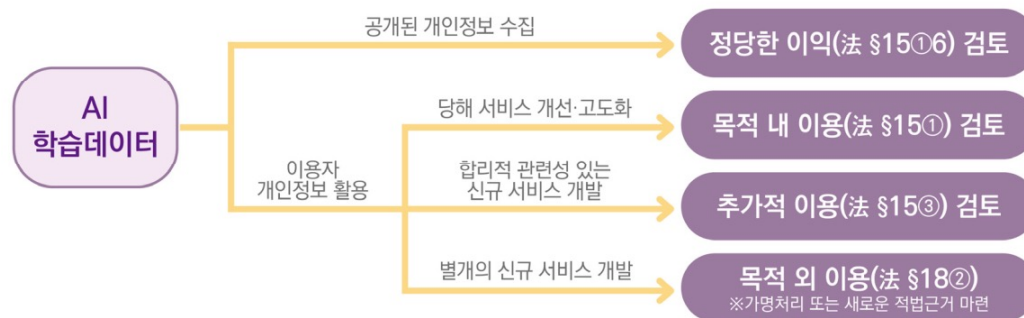
쟁점 사항

이용자 정보 활용 AI 개발은 개발법상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는가?

• AI 글래스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의 쟁점

- 개발법 제15조제1항제5호,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AI 기능 개선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개발법 제15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서비스 개선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이익형량을 토대로 하되, 추가적인 AI학습, 개발의 경우 합리적 관련성 기준으로 정보주체 예측가능성, 부당한 이익 침해, 안전성 확보조치 등 고려하여 판단

<AI 개인정보 수집 출처별 적법근거 검토 방향>



쟁점 사항

이용자 정보 활용 AI 개발은 개보법상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는가?

- (예시) 수집목적과 합리적 관련성 있는 이용
 - ✓ LLM 성능 개선 위해 이용자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AI 학습데이터로 수집.이용 시 옵트아웃 기능, 필터링 절차 등 전제로 사용 가능
 - ✓ 이용자 녹취 내용 데이터 사용하여 다른 목적의 DB 구축 시 개발 서비스가 소비자 입장에서 예측가능한지, 부당한 이익 침해여부 등 고려하여 판단
- (예시) 당초 수집 목적과 별개의 신규 서비스 개발
 - ✓ 질병 진단 보조하는 의료 AI 연구개발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병원이 보유한 MRI 등 영상정보가명처리 하여 학습데이터 이용
 - ✓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 이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혁신성, 공익성 등을 갖춘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 가능
 - ✓ 대화데이터를 챗봇 등 신규 서비스 개발에 안전조치 없이 이용한 경우 적법 처리 근거 없어 목적외 이용으로 판단
 - ✓ 자율주행 기업이 수집한 영상정보를 학습데이터로 이용 시 AI 성능 향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규제 실증특례를 활용해 강화된 안전조치 준수 하 동의 및 가명처리 없이 영상 원본 활용 허용 ⇒ 최근 법개정으로 **임시허가사업자는 일정 요건 하에 특례 적용**

쟁점 사항

(소비자 입장) 무단 촬영 및 녹취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생청구,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권을 재산적으로 사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이 문제됨
- 무단으로 음성을 녹취하는 경우
 - 국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대법원은 대화 참여자 녹음과 제3자 녹음을 구분해 전자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 그 밖에 AR 및 AI기반 글래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들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등 각 행위별로 개별법 적용됨



쟁점 사항

가상융합산업진흥법 관련 쟁점

-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오감 확장 또는 현실공간과의 혼합, 디지털 정보 간 상호작용을 가상융합기술의 한 양태로서만 규율
 - 법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나, AR 특유의 쟁점과 연결되는 규정 부재
 - ✓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
- 임시기준의 경우, 마련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임시기준 제도 신청에 한계가 존재함



개인정보보호법안 인공지능 특례 규정

2026년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이하 “익명처리”라 한다)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6. 3. 17.>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20조에 불구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한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익명처리 관련 특례 규정 사례로서 영상정보 처리에 있어서의 특례라는 점에서 후속 입법 논의에 참고 가능

개인정보보호법안 인공지능 특례 규정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안 (정무위 통합대안)

제28조의12(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성능 개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위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

1. 영상, 음성, 이미지, 부호 및 문자 등 처리되는 정보의 특성, 인공지능기술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
2.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환경에서 처리하거나 클라우드 환경 등 개별 상황에 따른 추가적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3.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전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위험요인평가”라고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기술 개발 관련 개인정보 처리 특례 규정으로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AI 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 사용가능하도록 허용

개인정보보호법안 인공지능 특례 규정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안 (정무위 통합대안)

④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요청한 내용이 종전에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심의·의결을 요청한 자와 그 주요 내용
2. 제3항에 따른 위험요인평가 결과를 요약한 내용

⑦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방법, 보호위원회가 부여하는 조건, 세부 심의 기준 및 절차, 위험요인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3(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12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에 관해서는 제6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공지능기술 개발 관련 개인정보 처리 특례 규정으로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AI 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 사용가능하도록 허용

개인정보보호법안 인공지능 특례 규정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안 (정무위 통합대안)

제28조의14(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 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2. 제28조의1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28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제28조의12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기술 개발 등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호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처리 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5(특례 이용에 대한 일부 규정 적용 배제) 제28조의12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8조의8(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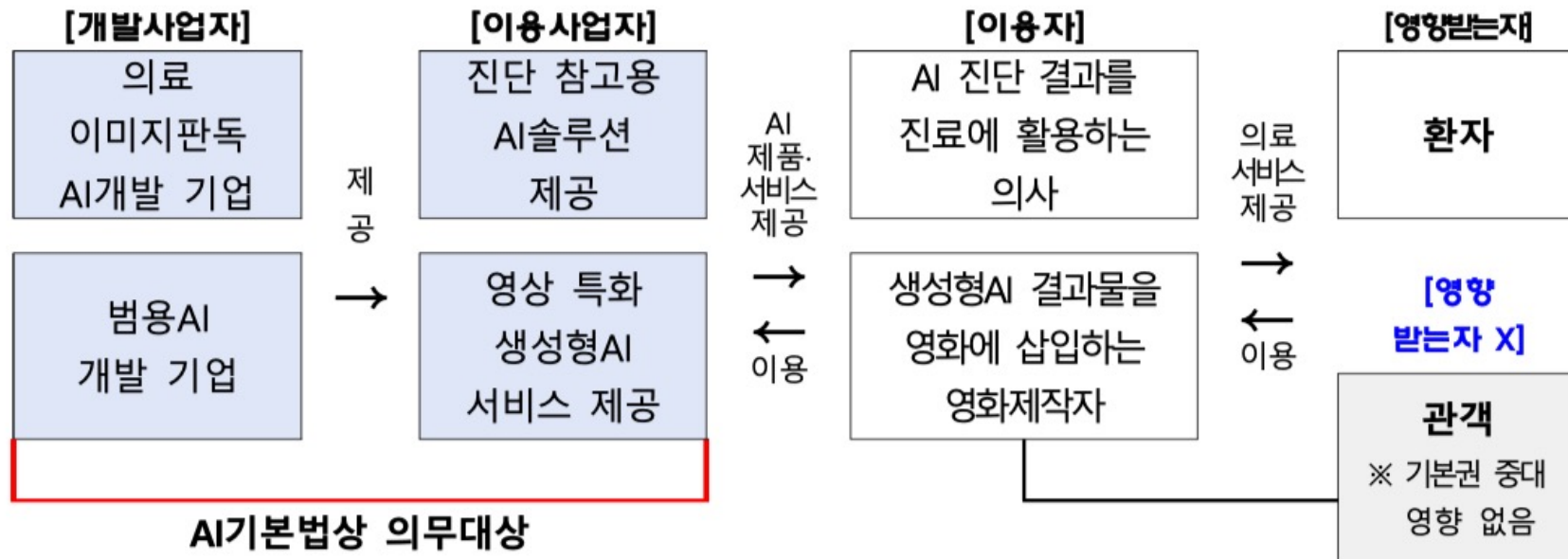
✓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를 적시

[인공지능기본법 인적 적용 범위]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영향받는자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서비스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공지능개발사업자로부터 인공지능을 제공받거나 2)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제품이나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 받아 직접 이용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제품과 인공지능서비스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모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에 대한 제어 권한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가 개발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중복 지위를 가지며 책무를 모두 부담 공공 및 민간 모두 적용 대상 			

디지털 의료기기, 공공서비스 등 고영향 영역에서 사용되는 기기나 콘텐츠에 한하여 고영향 AI사업자에 해당 가능성

< 가치사슬에 따른 AI기본법상 지위 예시 >



AI클래스 기반 AI 개발자는 개발사업자, AI 클래스 서비스 제공자 혹은 AI클래스 제조업자는 이용사업자, AI 클래스 활용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자는 이용자, 영상 촬영 대상자 등은 영향받는자에 해당



규범적 고려 사항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사전 명확화: 필요시 설정된 목적 외의 용도 제한이나 예외적 사용 등 강구 필요
- AI 클래스 운영 방식에 따른 처리 주체 명확화 필요
- 영상정보 해설서의 8대 원칙은 사업자 입증책임 장치로 인식 필요
- 사전 기획, 설계 단계에서 ISMS-P, PIA, PbD 시범인증 등 법정 인증 취득 고려 필요
- 취득 영상정보를 AI 개발에 활용 시 적법한 처리에 관한 법률 쟁점 해소 필요
- AI 기본법상 고영향 해당 여부 및 수범대상 여부 확인과 EU AI Act의 금지된 시스템인지 여부 등 법적 판단 필요



개발 단계 사업자 컴플라이언스 유의사항

- 디바이스 단계의 LED셔터음표시 UX의 실효성 확보
- 옵트아웃 절차(촬영 거부 의사 수용 메커니즘)와 운영관리 방침의 인터넷QR 공개
- 클라우드 전송AI 학습 활용은 가명처리 원칙필요 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활용
- 안면인식 결합 시 별도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2024.12.30. 최신판) 추가 적용
- 제조사-플랫폼-도입기업-이용자 간 책임 배분 계약문서화의 단계별로 컴플라이언스를 구축
- 사전적정성 검토제(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를 적극 활용할 필요

Ⅲ 법정책적 함의



법적 과제

영상정보 활용, AI 서비스 적용, 활용영역별 규제 등 복합적인 규제 쟁점이 제기되는 영역으로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어 개별 서비스별 법 해석 중요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 필요

- 1 자율주행 관련 RIISD 영국 사례처럼 외부에 표시방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 필요**
※ 설문자 86% 응답자가 자율 주행 시 외부에서 명확히 인지 가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
- 2 PbD 설계 인증제도의 법정 인증화 필요**
⇒ 사전적정성 확인 제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제도로서 운영되는 상황에서 동적 정보 활용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 필요
- 3 AI 기반 디바이스에 대한 안전 신뢰 기반 실증 제도 마련 필요 : 특히 디바이스의 경우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여 어느 형태의 서비스 실증 모델이 안전과 신뢰를 담보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안전성 연구 필요**
- 4 규제로 인식되는 인증 제도 도입 후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영상정보 취급과 같이 법해석이 모호한 영역에 적합**
⇒ 이 경우 인공지능기본법 제34조의 이행수단 간주 조항 적용과 연계 필요
- 5 AI 기반 분석이 포함되는 서비스 단위에서 정당한 이익 범주를 벗어나는지에 대한 개별 행위별 해석 기준 필요**
⇒ 원칙주의가 아닌 맥락 중심의 법 해석 필요

Lee
& KO

Thank you

E-mail : jun1@leeko.com